

[3] “Nasdaq pulls out of money-losing Japan venture”, AP World politics, 2002. 8. 21

[4] Nasdaq Japan site: <http://www.nasdaq-japan.com/>

---

## P2P 음악공유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

---

정보사회연구실 주임연구원 오태원  
(T. 570-4111, [jerry@kisdi.re.kr](mailto:jerry@kisdi.re.kr))

### 1. 미국의 움직임

미국 법무부가 peer-to-peer 음악파일교환에 대하여 형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P2P와 관련한 국내외의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 전망이다. 2002년 8월 미법무부 John Malcolm 차관보는 미국의 콘텐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무단 복제에 대하여 형사 기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작년 9.11 테러 이후 미법무부의 제한된 인력이 대 테러 대응으로 이 문제를 미처 다루지 못하였으나 이제 기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Malcolm 차관보는 재력이 없어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형사소추가 월등한 억제효과를 가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관할권에 걸친 국제적 수사를 진행할 의사도 있음을 내비침으로서 다른 나라의 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음반업계와 이로부터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P2P 음악파일 교환에 대하여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eft Act)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몇천만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다.

### 2. 우리나라의 움직임

한국 검찰은 P2P를 통해 파일을 교환한 이용자를 직접 기소하는 대신 소리바다라는 ISP를 저작권접권 간접 침해로 기소한 상태이며, 민사가처분 결정에 의해 소리바다 서버의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국음반협회는 소리바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Winmax’ 등 외국 P2P(개인대개인) 서비스 사이트와 국내 P2P 사이트에 네티즌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에 원천봉쇄 요청 예정이라고 한다. 7월 31일 소리바다 폐쇄 후 국내 네티즌들이 미국업체가 서비스 중인 P2P 서비스 Winmax에 몰려, 소리바다 폐쇄의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한국음반협회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응방안은, 8월 19일

미국 대형음반사들이 중국의 P2P 사이트인 'Listen4ever. com'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서, AT&T, Cable & Wireless USA, Sprint Corp 등 미국내 ISP업체들이 자사의 시스템을 통하여 Listen4ever 사이트를 넘나드는 인터넷통신을 봉쇄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것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즉 국내 ISP업체인 KT나 하나로 통신 등에 미국 윈맥스 사이트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접속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이다.

### 3. 분 석

미국의 Listen4ever 사례의 경우, 단지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영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를 중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그 사이트가 미국의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중국음악은 거의 없이 미국음악작품에 집중함으로써 미국소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이다. 그러나 Winmax의 경우, 한국의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작성된 것도 아니며 한국음악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므로, 한국법원이 개입하여 봉쇄할 근거가 박약하다. 즉 한국음악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국내의 ISP업체가 Winmax 사이트를 오가는 인터넷흐름을 차단하게 된다면, Winmax 사이트에서 한국음악이 아닌 미국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일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음반제작자들은 음반 판매의 부진과 이익의 감소가 음악파일의 공유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배포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디지털음악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송제기 움직임도 이러한 사업확대전략의 하나라고 하고 있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들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저작권보호대상이 되는 제품이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미국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저작권보호방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 산업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저작권보호를 위해 강구하는 방안이 소비자들의 권익침해를 야기시키거나 인터넷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1] "P2P 음악파일교환에 형사적 대응 움직임", CLIS Monthly 2002-03호
- [2] "인터넷접속 서비스업체에 대한 원천봉쇄 요청", CLIS Monthly 2002-03호
- [3] "'냅스터 소송' 그 이후", CLIS Monthly 2002-02호
- [4] "Company Fights Spam with Copyright, Trademark Law", Reuters news, August 19, 2002